

다가족·저소득층 유리…중산층 ‘稅테크’ 사실상 어려워졌다

근로자 세액공제 누구에게 더 유리할까

과표 4600만원이 기준

근로소득세가 확 바뀌면서 근로자들의 세금 계산법도 복잡해졌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저소득층의 혜택을 확대하고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키운다는 것이 큰 틀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계층별, 소득별, 가구별 복실이 달라진다.

◇세테크 말고 차리니 돈 아끼라= 지금까지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많이 받으려면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의 지출을 최대한 늘려야 했다.

기본공제나 인적공제가 주어진 조건이라면 특별공제는 끌수록 비용을 인정받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본인이 대학원을 다니거나 대학을 다니면 교육비 전액을, 종교기관이나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법정기부금의 경우 최고 전액을 공제받았다. 연금저축, 퇴직연금도 400만 원 한도를 채우는 근로자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표기준 4600만 원을 넘는 중산층, 고소득층은 연말정산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과표기준 4600만원은 실제 연봉이 7000만~8000만원 정도 되는 층이다.

과표구간 4600만원 이하의 경우 교육비는 세액공제율이 근로소득세율과 같아 공제혜택의 차이가 없다. 세액공제를 12%인 보장성보험, 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자는 메리트가 다소 줄었다.

근로세율 6%인 과표기준 1200만 원 이하는 이를 항목의 지출을 늘리면 세액공제율이 근로세율보다 높아 혜택이 크게 증가한다. 반면 근로세율 24~38%를 적용받는 4400만원 초과 소득자는 세율차이만큼 공제효과가 감소한다. 이를 소득자는 돈만 놓고 본다면 굳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늘릴 필요가 없다.

과월은 세무사는 “특별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중산층 이상은 사실상 세테크가 불가능하다”며 “소득 층면에서만 본다면 차라리 돈을 아끼는게 낫다”고 말했다.

◇세 부담, 1189만명은 감소 vs 343만명 증가=기획재정부는 2011년 귀속 근로소득을 토대로 1500여만 원 한도를 제외한 세금을 253만원에서 301만원으로 16만원 증가한 것이다.

기재부의 시뮬레이션은 올해 소득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이 ‘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5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자녀에 증여

증여세 공제액 상향

현금·주식·부동산 가능

성인이 된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1994년 이후 첫 인상이다.

증여대상은 현금 뿐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도 가능하다.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자녀가 부모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기존처럼 30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증여세 공제액 상향조정은 원칙적으로 개정안 시행(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세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자녀에게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는 부모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로 증여를

조세부담률 추이



미루는 게 절세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A씨가 딸에게 6000만원을 증여한다고 할 때 개정안 시행 이후로 내년 1월 6000만원을 한계액에 증여한다면 개정안에 따라 총 5000만원을 공제받고 증여세(1억원 이하로 세율 10% 구간)로 10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문제는 올해와 내년 두 해에 걸쳐 나눠서 증여할 때다. A씨가 올해 8월

5000만원을 증여하고 내년 1월 1000만원을 다시 증여한다면 공제액은 4000만원(올해 3000만원 + 내년 1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준다. 증여세로 1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A씨의 경우 올해에는 3000만원까지만 증여하고 나머지 3000만원을 내년에 증여한다면 개정 후 증액한도인 5000만원까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농민·영세음식점 세제혜택 줄어

과도한 혜택은 그만

농업소득세 2016년 부활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으로 그동안 과도한 세제 혜택을 누렸던 부분에 메스를 댄다. 회색지대로 남아있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에 소득세

를 부과하고, 한동안 폐지됐던 농업소득세도 부활시킨다. 식재료를 구입하는 영세 음식점에 부가세를 깎아주는 범위도 대폭 줄인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의 수당 등에 규정’에 따라 모든 공무원에게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비다. 하지만 민간의 직급보조비는 근로소

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겨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근로소득(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여·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공무원 직급보조비’ 항목을 추가하고 2015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과세 형평성 논란이 커던 ‘맞춤형 복지포인트’에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공무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100만원으로 2015년부터 조정한다.

농민 과세는 부활한다. 고소득 작물재배업자에게도 2016년부터 소득세(국세)를 물린다. 그동안 농업에 대한 세금은 농지세(지방세) 형태로 부과되다가 2000년 농업소득세(지방세)로 이름이 바뀌었고, 세수효과가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4년 과세가 중단된 이후 2010년 폐지됐다.

정부는 우선 채소·화훼·과실·인삼·묘목 등 고부가가치 작물재배 농가 중 수입금액이 연간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사업소득세를 매길 방침이다. 쌀·보리 등 식량작물은 제외된다. 소득 파악을 위해 납세 대상자는 매년 사업장 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연합뉴스

日만정

- 김종우



한편, 짠하기도 하다



목사·스님 등 종교인 과세

성역 없는 과세

세수효과 1000억 주산

정부는 8일 공개한 세법개정안에서 목사·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과세대상 종교인은=과세 대상 종교인의 정의와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재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종교인에 세금을 내라고 하지 못했다. 이번에 기재부는 2015년 이후 발생하는 종교인의 소득분에 과세하기로 해 40여년 간의 논란에 막을을 짬었다.

◇종교인에 기타소득세 부과한다=최대 징검이던 소득 분류 방법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가닥이 잡혔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강연료·인세·자문료·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불는 세금이다.

기타소득의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빼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 22%(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을 원천징수한다. 이렇게 되면 소득의 4.4%만 세금으로 내게 된다.

종교인 과세의 세수효과는 100억 원에서 크게는 1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3 추석맞이 팔도 농특산물 큰잔치

Paldo's Special Offers Event for Thanksgiving Day

9.10(화) ~12(목) 3일간
서울시청광장 특설전시장

주최·주관_ 한국지방신문협회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3 추석맞이 팔도 농특산물 큰잔치

2013 추석맞이 팔도